

## [ 세칙 9호 ]

# 차차기회장 선거 운영세칙

제1조(명칭) 본 운영세칙은 한국품질경영학회(이하 학회)의 차차기회장 선거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제2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차차기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조(선거관리위원)

1.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학회장은 차차기회장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진행할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학회의 부회장 이상에서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위원을 4명 이내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차차기회장이 총회에서 인준받는 시점까지이며 총회에서 차차기회장의 인준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차차기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6. 위원회는 선거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비공개할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7. 위원회 위원장은 진행사항을 필요시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에서 차차기회장 인준 전에 경과보고를 한다.

### 제 4조 (선거관리 절차)

차차기회장 선거는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전에 차차기회장 선거 일정을 알리고, 차차기회장 후보(이하 후보) 모집을 공고한다. 선거는 현 회장의 2년차 가을 학술대회 개최후 1주일 또는 2주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후보자의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공정한 선거 약속 이행서'를 받는다(별첨 1).
4. 위원회는 후보자의 서류를 투표일 14일 전까지 투표권을 갖는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5. 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후보자들에게 비윤리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6.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차기회장 1인을 총회에 추천한다.
7. 총회는 추천된 후보를 인준함으로써 차차기회장으로 최종 확정한다.

### 제 5조 (후보등록)

1. 선거관리위원 이외의 정회원은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
2. 후보를 희망하는 회원은 학회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추천자 사인 혹은 날인 포함)과 A4 1페이지 이내에 자신의 이력 및 선거 출마에 대한 의견을 적어 학회 사무국에 메일로 송부한다.
3. 학회 임원 중 부회장 및 이사 등 투표권을 가진 자가 차차기회장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의 직을 자동 사퇴한다.
4. 후보로 등록한 정회원은 윤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 제 6조 (선거)

1. (단수 후보) 후보가 단수인 경우, 회장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2. (복수 후보) 후보가 복수인 경우, 투표를 실시한다. 회장은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획득한 후보

- 를 총회에 차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3. (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표를 진행한다.
  4. (감사) 투표가 실시되면 감사는 참관인으로 투표과정을 감시하고, 투표결과 발표 전에 감사과정을 학회장에 보고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 공정한 선거 약속 이행서

(양식-1)

## 공정한 선거 약속 이행서

본인은 한국품질경영학회 차차기 회장 선거에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겠음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날인 혹은 사인)

2020년 10월 23일 총회 의결사항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세칙 제9호 차차기 회장 선거 운영세칙	<p>제 6조 (선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수 후보)후보가 단수인 경우, 회장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li> <li>2. (복수 후보) 후보가 복수인 경우, <del>이사 회에서 후보자들의 출마 소견을 듣고</del> <b>비밀투표</b>를 실시한다. 회장은 최다 득표를 획득한 후보를 총회에 차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한다.</li> <li>3. (감사) <del>비밀투표</del>가 실시되면 감사는 참관인으로 투표과정을 감시하고, 투표결과 발표 전에 감사과정을 <del>이사회에</del> <b>학 회장에</b> 보고한다.</li> </ol>	<p>제 6조 (선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수 후보)후보가 단수인 경우, 회장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li> <li>2. (복수 후보) 후보가 복수인 경우, 투표를 실시한다. 회장은 최다 득표를 획득한 후보를 총회에 차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한다.</li> <li>3. (투표)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표를 진행한다.</u></li> <li>3.4. (감사) 투표가 실시되면 감사는 참관인으로 투표과정을 감시하고, 투표결과 발표 전에 감사과정을 학회장에 보고한다.</li> </ol>	투표 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표하는 것으로 개정

2021년 7월 5일 개정사항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세칙 제9호 차차기 회장 선거 운영세칙	<p>제 4조 (선거관리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서류를 <del>이사회</del> <b>주 전까지</b> 투표권을 갖는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li> </ol>	<p>제 4조 (선거관리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서류를 <b>투표일 14일 전까지</b> 투표권을 갖는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li> </ol>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4일이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음
	<p>제 6조 (선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투표) <del>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del>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표를 진행한다.</li> </ol>	<p>제 6조 (선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표를 진행한다.</li> </ol>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회장 선거 관련 온라인 투표시스템 기능을 민간 업체에 이양하였음

2023년 4월 28일 개정사항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p>제3조(선거관리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li> <li>2. 학회장은 차차기회장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진행할 선거관리위원장 (이하 위원장)을 학회의 부회장 이상에서 임명한다.</li> <li>3. 위원장은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위원을 4명 이내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li> <li>4. 위원장을 포함한 <del>선거관리위원은</del>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차차기회장이 총회에서 인준 받는 <del>시점까지 한다.</del>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한다.</li> <li>5. <del>선거관리위원은</del> 위원장의 책임 하에 차차기회장 선거를 진행한다.</li> <li>6. <del>선거관리위원은</del> 선거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비공개할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li> <li>7. <del>위원장은</del> 진행사항을 필요시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에서 차차기회장 인준 전에 경과보고를 한다.</li> </ol>	<p>제3조(선거관리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li> <li>2. 학회장은 차차기회장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진행할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학회의 부회장 이상에서 임명한다.</li> <li>3. 위원장은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위원을 4명 이내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li> <li>4. 위원장을 포함한 <b>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b>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차차기회장이 총회에서 인준받는 <b>시점까지이며</b> 총회에서 <b>차차기회장의</b> 인준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한다.</li> <li>5. <b>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은</b> 위원장의 책임하에 차차기회장 선거를 진행한다.</li> <li>6. <b>위원회는</b> 선거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비공개할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li> <li>7. <b>위원회</b> 위원장은 진행사항을 필요시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에서 차차기회장 인준 전에 경과보고를 한다.</li> </ol>	문단정리
세칙 제9호 차차기 회장 선거 운영세칙	<p>제 4조 (선거관리 절차)</p> <p>차차기회장 선거는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el>회장 임기 2년차 마지막 정기 이사회 30일 전에 차차기회장 선거를 알리고,</del> 차차기회장 후보(이하 후보) 모집을 공고한다.</li> <li>2. <del>위원장은</del> 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을 <del>요청한다.</del></li> <li>3. <del>후보자의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됨을 알리고,</del> ‘공정한 선거 약속 이행서’를 받는다(별첨 1).</li> <li>4. <del>위원장은</del> <del>후보자들의</del> 서류를 투표일 14일 전까지 투표권을 갖는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li> <li>5. <del>선거관리위원은</del> <del>후보들의</del> 선거운동이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del>감시</del> 하며, 필요한 경우 <del>후보자들에게</del> 권고할 수 있다.</li> <li>6. <del>이사회에서는</del> 차차기회장 1인을 <del>선정해</del> 총회에 추천한다.</li> <li>7. <del>이사회에서</del> 추천된 후보를 총회에서 <del>인준함으로</del> 차차기회장으로 <del>확정한다.</del></li> </ol>	<p>제 4조 (선거관리 절차)</p> <p>차차기회장 선거는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전에 차차기회장 선거 일정을 알리고, 차차기회장 후보(이하 후보) 모집을 공고한다.</b> 선거는 현 회장의 2년차 가을 학술대회 개최 후 1주일 또는 2주일이내에 진행하도록 한다.</li> <li>2. <b>위원회는</b> 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을 <b>요청할 수 있다.</b></li> <li>3. <b>위원회는</b> 후보자의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b>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b> ‘공정한 선거 약속 이행서’를 받는다(별첨 1).</li> <li>4. <b>위원회는</b> <b>후보자의</b> 서류를 투표일 14일 전까지 투표권을 갖는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li> <li>5. <b>위원회는</b> <b>후보자들의</b> 선거운동이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후보자들에게 <b>비윤리적 이거나 불공정한 행위의 시정을 권고</b>할 수 있다.</li> <li>6. <b>회장은</b>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차기회장 1인을 총회에 추천한다.</li> <li>7. <b>총회는</b> 추천된 후보를 <b>인준함으로써 차차기회장으로 최종 확정</b>한다.</li> </ol>	문단정리